

광주지방법원 2023. 12. 13 선고 2022나64883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4. 4. 16 선고 2024다200748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3. 12. 13 선고 2022나64883 판결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. 9. 7 선고 2021가단50834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1. 유한회사 A

2. 유한회사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경광

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대현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욱

변론 종결 2023. 8. 30.

판결 선고 2023. 12. 13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. 9. 7. 선고 2021가단50834 판결

주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A에 23,034,572원, 원고 유한회사 B에 68,586,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. 2. 23.부터 2023. 12. 13.까지는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
3.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A에 36,960,000원, 원고 유한회사 B에 103,4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들은 2018. 7. 12. 피고와 사이에 전남 무안군 D에 태양광발전소 설치허가를 받아서 이를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(대금: 원고 유한회사 A 589,600,000원, 원고 유한회사 B 1,474,000,000원, 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는데,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설치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금, 중도금에서 이미 진행된 용역대금을 정산하여 공제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(이하 '이 사건 반환약정'이라 한다)하였다.

나. 2018. 7. 19.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피고에게, 원고 유한회사 A은 58,960,000원, 원고 유한회사 B은 147,400,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.

다. 그 후 무안군에서 2020. 6. 4. 위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위 공사 진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1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들

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만약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그때까지 자신이 수행할 용역대금은 원고 유한회사 A의 경우 2,200만 원, 원고 유한회사 B의 경우 4,400만 원이므로 계약금에서 이를 각각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주겠다고 설명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서 위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

1) 위 불허가 당시까지 피고가 진행한 용역대금은 다음 표기재와 같이 106,530,000원이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.

개발행위허가	E	38,500,000
소규모환경/사전재해영향평가	F	32,000,000
지반조사수수료	G	1,430,000
산림조사서 방재계획서 작성	(유) H	4,000,000
산림조사서 및 방재계획서 재작성	(유) H	600,000
설계(구조물,전기,토목) 및 기술컨설팅	I	22,000,000
대관업무 수수료(인허가, 한전 등)	J	8,000,000
	106,530,000	

2)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용역수행기간을 예정공정표에 기재된 150일로 설정하였는데,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150일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8. 7. 12.부터

무안군의 심의부결 통보일인 2020. 6. 10.까지 약 23개월간 용역을 수행하였다. 피고는 위 초과기간 동안 인건비, 법인차량 유지비, 법인카드 및 현금 사용액 등 합계 42,736,000원을 추가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,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에서 위 추가 비용 42,736,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.

3. 판단

가. 106,530,000원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

갑 제6호증,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제1심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,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직원으로서 담당자인 K은 원고들에게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발생할 용역대금으로서 공제되어야 할 돈은 원고 유한회사 A의 경우 2,200만 원, 원고 유한회사 B의 경우 4,400만 원인데, 여기에는 개발행위허가, 소규모환경/사전재해영향평가, 설계(구조물, 전기, 토목) 및 기술컨설팅, 대관업무 수수료(인허가, 한전 등)가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간략 견적서를 교부한 사실, 그런데 용역수행과정에서 위 업무 이외에 추가로 지반조사수수료 1,430,000원, 산림조사서 방재계획서 작성 4,000,000원, 산림조사서 및 방재계획서 재작성 600,000원의 업무가 소요된 사실을 알 수 있다.

따라서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돈은 원고 유한회사 A의 경우 2,200만 원, 원고 유한회사 B의 경우 4,400만 원에다가 위와 같이 추가로 수행된 용역대금 합계 6,030,000원(=1,430,000원+4,000,000원+600,000원)을 원고들의 계약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서 원고 유한회사 A의 경우

1,715,143원[=6,030,000원×58,960,000원/(58,960,000원+147,400,000원)], 원고 유한회사 B의 경우 4,287,857원[=6,030,000원×147,400,000원/(58,960,000원+147,400,000원)]을 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.

나. 42,736,000원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

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바(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), 피고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추가 비용의 공제 주장을 하였음에도,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고

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다¹⁾.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위 추가 공제 주장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추가 비용의 공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.

따라서 피고가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42,736,000원을 원고들의 계약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, 원고 유한회사 A의 경우 12,210,285원(= $42,736,000\text{원} \times 58,960,000\text{원} / (58,960,000\text{원} + 147,400,000\text{원})$), 원고 유한회사 B의 경우 30,525,714원(= $42,736,000\text{원} \times 147,400,000\text{원} / (58,960,000\text{원} + 147,400,000\text{원})$)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.

다. 소결론

결국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A에 23,034,572원(= $58,960,000\text{원} - 22,000,000\text{원} - 1,715,143\text{원} - 12,210,285\text{원}$), 원고 유한회사 B에 68,586,429원(= $147,400,000\text{원} - 44,000,000\text{원} - 4,287,857\text{원} - 30,525,714\text{원}$)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. 2. 23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. 12. 13.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,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,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이미주

판사김연경

판사남수진

1)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23. 6. 13.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, 위 준비서면은 이 사건과 무관한

다른 사건의 준비서면을 잘못 제출한 것이었고,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당일에 위 준비서면의 제출을 철회하였다.